

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수정이유

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리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협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조례안중 제5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화매립장에 적용이 불합리하고, 별도 기금관리에 부적정이 우려됨으로서 기금조성내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7조제2항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(수정안 제5조)
- 나.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(수정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수정안대비표 : 별첨

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예산의 편성)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7조제2항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.

안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업의 추진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안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	수정사유
<p>제5조(주민지원 기금의 조성)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연금 2.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.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<p>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	<p>제5조(예산의 편성)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7조제2항의 협의결과에 의하여 소요 되는 예산을 지원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.</p>	<p>보상의 성격상 주민협의 결과에 의해 즉시 시행되어야 하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별도 관리함이 절차상 부적절</p>
<p>제6조(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조성된 지원기금은 일정액 이상 적립후엔 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.</p> <p>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는 영 제26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사업의 추진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원안제5조 수정으로 내용변경</p>
<p>제7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~3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</p> <p>2.~3.(생략)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7조(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·운영)</p> <p>①(원안과 같음)</p> <p>1.~3.(원안과 같음)</p> <p>②(원안과 같음)</p> <p>1.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</p> <p>2.~3.(원안과 같음)</p> <p>③~④(원안과 같음)</p>	<p>원안제6조 수정으로 내용변경</p>